

'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(무료) 안내

'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 을 실시해야 합니다.

◆ 사업목적

법정 의무교육인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비용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

◆ 지원대상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자 [해당 사업장(기관)에 소속된 근로자]

◆ 지원내용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사업장에 지원하여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.
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, 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

◆ 신청방법

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제출

수행기관명(경북소재)	지역	연락처	이메일	담당자
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	경북	전화) 054-272-9260 FAX) 054-727-9250	mentohome@hae-sol.com	윤현자
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에서 ‘21년도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명단 확인 및 신청서 양식(별첨 참고) 다운로드 가능 [교육포털 접속>무료 교육지원>강사지원사업 안내 및 수행기관 찾기’ 메뉴 이용]

◆ 문의: 054-272-9260 (인식개선교육 담당자)

교육일정은 신청기관과 협의 후 진행

[별첨] 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' 양식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				
신청인	사업장명		업종	
	대표자성명		전화번호* (회사<기관>)	
	담당자 성명		팩스번호	
	상시근로자수		장애인근로자수	
	소재지			
신청내용 (희망내용)	교육일시	월 일	☐ 오전 시 분 ☐ 오후 시 분	
	교육장소	☐ 사업장 내 ☐ 외부장소 이용 ()		
	기타			
	※ 희망신청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결정됩니다.			
위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신청합니다. 2021년 월 일 신청인 (인) 멘토장애인평생교육원 귀하				